

연구보고서

노인수형자 관련 교정사고 유형분석과 적정 수용시설 처우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이진하

연구보고서

노인수형자 관련 교정사고 유형분석과 적정 수용시설 처우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이 진 하

노인수형자 관련 교정사고 유형분석과
적정 수용시설 처우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최재성

이 보고서를 연구보고서로 제출함

2019년 5월 16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이진하

이 진 하의 연구보고서로 인준함

심사의원 최재성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년 6월 4일

감사의 글

늦게 시작한 것만큼 지식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욕구는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힘들었던 나날을 견디게 해주었다. 중학교 때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워져 신문배달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야 했다. 내 주변에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다.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날그날을 열심히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 꽂이 되었다.’라는 시구를 암송하면서, 언제고 내게도 좋은 기회는 오리라는 희망은 늘 가졌다. ‘소나기’와 ‘별’을 읽으면서 순수한 사랑을 해보고도 싶었지만 내게는 먼 이야기인 것만 같았다. 1984년 초 군부독재의 연장선상에서 사회가 혼란했던 시절 나는 지원해서 군대를 갔고 제대 후, 책을 읽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함을 느꼈던 것을 알았던 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갖는 것이 먼저였기에 공직에 첫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세월이 유수라’했던가? 어느 틈엔가 많은 시간이 흘러만 갔다. 가정을 꾸리고 사랑스런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유한한 삶을 살면서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불혹의 나이에 방송통신대학교를 들어가 인문학사와 자연학사의 자격을 취득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줄만 알았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라고 했던가! 유능한 석학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놓칠세라, 힘든 경쟁률을 제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당당히 합격했다.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새로운 길에 이정표를 제시해주신 지도교수 최재성 교수님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고, 보잘 것 없는 제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심에 가슴 속깊이 늘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늘 곁에서 격려해주면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순간을 가져보지 못했을 것이다. 끝으로 사랑하는 딸 승현이와 아들 승환이에게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어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해주고 싶다. 다시 태어나도 나의 아내를 만나 우리 가정을 꾸미고 싶다. 그리고 그동안 못해 주었던 것을 정말 잘해주고 싶다. 계윤, 승현, 승환아, 아빠공부에만 신경 쓰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 너무 미안했고, 사랑한다.

〈차 례〉

〈요약〉	1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중요성	2
1.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1.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5
제2장 노인수형자에 대한 고찰	
2.1 교정 복지와 노인수형자	6
2.2 노인범죄의 증가 및 노인수형자의 수용실태	7
2.2.1 노인범죄의 증가.....	10
2.2.2 노인수형자의 수용 실태.....	11
2.3 노인수형자의 현황과 처우.....	13
제3장 노인수형자 관련 교정사고 유형분석	
3.1 노인수형자 관련 교정사고 현황과 특성.....	15
3.2 교정사고의 유형 및 교정제도의 한계	17
제4장 노인수형자 적정 수용시설 처우 개선방안	
4.1 노인수형자에 대한 인식전환.....	22
4.2 노인전담 수용시설의 확대	23
4.3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	24
4.4 노인수형자 전담 교도관의 양성	25
4.5 노인수형자를 위한 적정 프로그램의 개발	26
제5장 결 론.....	26
참고문헌	28

요 약

한국 사회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범죄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으며, 2025년이 되면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된다. 과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지탱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여건상 대다수의 노인들은 노후의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거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¹⁾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이 가장 심하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빈곤에 시달리면서 상당부분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빈곤의 이유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노인수형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교정시설 내에서 노인수형자가 차지하는 교정사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본 연구는 노인수형자 증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노인수형자 관련 안전사고와 교정사고의 유형을 분석하여, 적정 시설 처우개선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하는 과정은 선행되어온 문헌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실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신자료인 2018년 교정통계연보 및 법무부 공개자료 등 서울남부교도소 자체 조사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노인수형자에 대한 교정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노인수형자간 폭행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시설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폭행 관련은 대체로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하거나,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폭발해버리는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경우가 많았고, 처벌수위가 미비할 정도로 가벼운 것들이었다. 노인수형자들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현실에 맞는 처우이다. 하지만 한국의 교정시설은 아직 증가하는 노인수형자에 부응하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노인수형자에 맞는 적정 처우 개선의 제언으로서, 첫째 교도관의 노인수형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전담 수용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수형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수형자 전담 교도관을 양성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수형자를 위한 적정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노인수형자에 대한 진정한 교정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

주제어 : 고령사회, 노인수형자, 노인범죄, 교정복지, 노인전담수용시설

1)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위이다. 한국은 '기대수명이 세계 최고인 나라이면서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영국신문 가디언: 세계의 불평등 현재 기사 중에서 한국의 특이한 상황을 조명(서울:연합뉴스. 2017.8.)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중요성

노인수형자²⁾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으며, 2025년이 되면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하게 된다. 200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8년 후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24년 걸렸고, 독일은 40년, 미국은 73년, 프랑스가 115년이 걸린 것에 비교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 그만큼 우리사회는 가파르게 늙어가고 있다. 과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지탱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여건상 대다수의 노인들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그들만을 위한 노후의 준비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³⁾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들은 범죄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다. 최근 5년 동안 노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범죄는 45% 늘었으며 이 가운데 강력범죄인 살인, 방화, 강간 등 성폭력 범죄도 70% 급증했다.⁴⁾ 노인범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것이고 한국의 열악한 재정상태가 노인범죄 급증의 주범이라는 미국 CNN 보도사례도 있었다.⁵⁾ 노인들의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가 없는 노인은 기댈 곳 없이 사회와 단절됐다고 느끼고, 이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이어지거나 우울증,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⁶⁾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노인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노인범죄의

-
- 2)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하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판결로 확정) 집행 중에 있는 자(기결수용자)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노역수용자)를 함께 이르는 말로서, 수용자(교정시설 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자(미결수용자)와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되어 있는 자, 노역유치 명령을 받은 자를 모두 포함)와 구분된다.
- 3)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위이다. 한국은 ‘기대수명이 세계 최고인 나라이면서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영국신문 가디언: 세계의 불평등 연재 기사 중에서 한국의 특이한 상황을 조명(서울:연합뉴스, 2017.8.)
- 4) 방성훈 기자(2018.12.)‘CNN 방송보도’인용. 네이버 검색(2019.5.3.)
- 5) 한국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1990년 후반에야 도입한 탓에 수혜자가 40%에 불과하여 현재 노인의 절반가량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어, 노인범죄가 심각하며 범죄의 증가는 빈곤 탓이다.(방성훈 기자. 12.19. 이데일리:미국CNN 보도자료 인용)
- 6) 조윤오 동국대교수는 ‘많은 노인들은 갈 곳이 없어 오히려 교도소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알아야 늘어나는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방성훈 기자.)

대부분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해당되는 절도, 단순폭행, 점유이탈횡령 등이 저질러지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는 반복되어 진다는 것과 강력한 범죄로 연결되어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범죄는 결국, 교정시설의 노인수형자 비중을 증가시키게 되면서 노인수형자를 전담하여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정본부는 2014년 3월,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대책으로 전국 네 곳의 지방교정청별 각 1개 기관을 정하여 노인전담 수용시설을 선정했다.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갖추고,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전의 수용시설과는 차별화된 노인을 위한 배려였다. 하지만 시설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노인수형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었고, 가뜩이나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수형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늘어나는 노인수형자를 위한 노인전담 대체⁷⁾ 수용시설을 확대하고, 기존의 낡고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정비하여 노인수형자에 대한 적정처우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수형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시설적 처우⁸⁾이다.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노인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이다. 나아가 현대식시설 또는 낡고 오래된 교정시설이라도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때, 노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수형자를 위한 적정 시설적 처우가 결국은 노인수형자에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
- 7) 한정된 노인전담수용시설을 전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수형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교정기관에서 일반 수용동의 일부 구간을 구획하여 노인수형자를 위한 전용 거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설측면이나 처우에 있어 미흡하다.
 - 8) 시설적 처우는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노인수형자는 넘어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노인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거실, 화장실, 복도, 등 활동공간이 있는 곳에는 자산의 몸을 지탱해줄 수 있는 손잡이 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표1〉 고령사회 인구 추이⁹⁾

(단위 : 천명, %)

연도	총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70세 이상	구성비	80세 이상	구성비
2019	51,709	7,684	14.9	5,235	10.1	1,759	3.4
2020	51,780	8,125	15.7	5,466	10.6	1,874	3.6
2025	51,905	10,511	20.3	6,797	13.1	2,441	4.7
2030	51,926	12,979	25.0	8,885	17.1	2,977	5.7
2035	51,629	15,237	29.5	11,039	21.4	3,771	7.3
2040	50,855	17,223	33.9	12,940	25.4	5,171	10.2
2045	49,574	18,329	37.0	14,501	29.3	6,485	13.1
2050	47,744	19,007	39.8	15,159	31.7	7,457	15.6
2055	45,405	18,814	41.4	15,482	34.1	8,134	17.9
2060	42,837	18,814	43.9	15,117	35.3	8,221	19.2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재구성

1.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중심으로 퇴직자가 몰려나오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생부터 1963년까지의 세대로서, 2020년부터는 1955년생이 만65세가 되는 노인으로 분류된다. 한국사회는 이미 2017년 UN이 정한 국민의 전체 인구 중 만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14%을 넘어선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 앞으로 2025년이 되면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노인의 문제가 사회문제의 큰 이슈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노인문제의 하나가 노인범죄이고, 교정시설에서의 노인수형자의 비중이 커가는 원인을 제공하는 주범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 문제에 교정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교정시설이 과밀화되고 노인수형자를 위한 노인전담 수용시설의 부족은 대다수 노인수형자들의 교정사고 우려를 높일 수 있다.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교정시설 52개 기관 중에서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네 곳의 지방교정청 소속 각 1개 기관만이 노인전담 수용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¹⁰⁾. 노인전담 수용시설은 2014년 3월부터 지정 운영되어 오면서도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수형자에 비례해서 새롭게 신축되거나 확대 지정·운영되는 곳이 없어, 대부분의 노인수형자들은 노인전담 수용시설에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9) 통계청. 주요 인구지표: 자료갱신일(2019.3.28.)

10) 법무부 교정본부(2014.4.7.)는 전국의 교정시설 중에서 서울남부(교), 대구(교), 대전(교), 광주(교) 등 네 곳을 노인수형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지금껏 운영해 오고 있다.

전국의 어느 교정시설이나 수용과밀화 되어 있는 환경에서 노인수형자를 위한 처우는 일반 수용시설의 일부 구간을 구획하여 고령자를 위한 수용거실을 만들어 운영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노인수형자를 위한 전문 의료처우와 프로그램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교정당국은 초과 수용되는 심각한 현 교정현장에서 특히, 노인수형자를 위한 노인전담 수용시설을 신축하거나 확대 설치하는 것에 그다지 많은 노력이 보이질 않는 것 같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했던 선진국들의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보면,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과 재원을 과감하게 투자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우리사회가 노인인구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으면서 노령연금, 기초수급, 의료처우 등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어 가는 마당에 교정시설의 노인수형자에게조차 국가적 관심을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수형자가 2014년 1,019명 이었던 것이, 4배나 증가하여 2017년 4,243명이 되었다. 양적으로도 가파르게 증가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교정현장에서 노인수형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교육의 질은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노인수형자들의 수용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다양한 교정사고의 실태를 분석·연구하고, 노인수형자의 특성과 교정사고의 사례유형을 근거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노인수형자의 수용생활에 적정한 시설적 측면에서의 처우개선과 프로그램운영 등 노인수형자를 위한 적정 처우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1.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노인수형자의 교정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적정 수용시설 처우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조사와 공개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 조사는 노인수형자 관련 국내·외 학위논문을 참조하였고, 2018년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범죄백서 등 내부자료 및 관계 법령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무엇보다 선행되어온 문헌과 노인전담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4개의 기관 중, 한 곳인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수형자들 대상 처우 및 프로그램운영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노인전담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전국 4개 기관(서울, 대전, 대구, 광주)의 노인수형자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접근방법으로는 법무부 교정본부 발간 교정통계연보, 교정사고 통계분석 등 최신문헌 및 내부 사례자료를 참조하였다. 내부 사례자료 중에는 노인수형자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실어,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노인수형자 처우개선(안)에 입각한 노인 전담수용시설 설치의 취지와 목적이 얼마만큼 이행되고 있는지는 비교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노인수형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언하도록 하였다.

글의 내용에 있어,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중요성을 괴력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빈곤 및 노인범죄의 심각성과 결국은 노인수형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교정 복지와 노인수형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노인수형자의 현황과 처우를, 제3장에서는 노인수형자 관련 교정사고 사례를 제시하면서 유형을 살펴보았고, 제4장에서는 노인수형자를 위한 적정 수용시설 처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5장 결론에서는 노인수형자를 위한 노인전담 수용시설이 보다 활성화되고 나아가 교도관의 노인수형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교정사고 예방 등 노인수형자를 위한 적정 수용시설 처우를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교정 복지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제2장 노인수형자에 대한 고찰

2.1 교정 복지와 노인수형자

교정 복지는 교정¹¹⁾을 포함하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수형자에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며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인간의 기초적 생활을 함으로서 사회 내의 정상적인 생활에로의 복귀를 추구하는 것이다.¹²⁾ 노인수형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커짐에 따라 사회복지차원에서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요구된다. 한국사회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범죄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이 가장 심하다¹³⁾.

빈곤의 이유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⁴⁾ 노인범죄를 보면 대부분이 생활범죄이다. 빈곤의 환경이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범죄의 반복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다. 노인의 범죄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경제와 관련된 사기, 절도, 횡령 등 비교적 가벼운 죄질이기 때문에 벌금 또는 집행유예

11) 교정이란 범죄를 행한 개인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과거 행동에 대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회적응을 위하여 직업훈련 등 출소 후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12) 이영희. 2000. “교정복지의 이론과 실제”. 홍익출판사.

13) 중앙일보. 2019. “OECD 지표 소 한국...걸은 멀쩡, 뜯어보면 곳곳 ‘불명예’1위”. 4월 27일.

14) 경기일보. 2018. “노인 빈곤시대 설 곳이 없다: 늘어가는 고령범죄” 11월 11일.

와 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이 낮은 것으로 설명된다. 생활범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경제적인 빈곤과 신체적 기능저하가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교정시설 안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수형자에 대한 건강관리 유지와 출소 후, 일거리를 연계해줄 수 있는 실용적인 노인전문프로그램이 운영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체적 건강관리와 출소 후 일자리 지원이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과학의 발달, 기대수명의 연장 등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이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노인수형자 중에는 새로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출소 후 사회적응을 준비하는 자가 있는가하면, 주어진 틀에서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도 많다. 교정 복지는 재범을 예방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인수형자 관련, 전문적이고 사회생활과 연계되어질 수 있는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운영하면서 노인수형자들에게는 자율적 참여와 삶의 희망을 갖게 해줌으로써 진정한 교정 복지를 실현하는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

2.2 노인범죄의 증가 및 노인수형자의 수용실태

노인인구의 사회적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은 노인의 빈곤에 대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비하면 역부족이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노인성질환 등 활동성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먼 이야기이다. 국가의 인구학적 사회변화에 따른 대책 미흡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노인들의 사회적 비중이 크다는 것은 인구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 가능인구에서 배제되면서 사회적 소외감에서 오는 이질감은 경제적 빈곤이 더해져 노인범죄로 내모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노인인구 비중이 커지고 노인범죄가 증가함으로서 노인수형자도 늘어나고 있다. 2008년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60세 이상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 중 4.4% 이던 것이 2017년에는 11.6%에 이르는 약 3배가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노인수형자를 전담할 수 있는 수용시설은 부족하다. 우리사회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수형자들에게는 여파가 미비하게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노인전담

15) 2018교정통계연보.“수형자 연령별 인원(2008년~2017년)”

수용시설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면서도 현 실정은 태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별한 보호¹⁶⁾가 요구되는 노인수형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대식 교정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낙후된 교정시설과 부족한 수용시설은 특별보호대상인 노인수형자에 대한 적정한 시설처우에 한계가 있다.

아래 <표2> 전국교정시설 현황에서 살펴보면 전국의 52개의 교정시설 중에 20년 이상 된 건물이 65%, 30년 이상 된 건물이 48%, 40년 이상이 25%나 되었을 정도로 상당수가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들이다. 재건축할 대상의 건축물이 많아도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진행상황이 쉽지가 않다. 교정시설 자체가 부동산 분류에서 혐오시설¹⁷⁾로 규정하고 있어, 주변의 지역주민들에 의해 외면되고 교정시설로서 적당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갈 만한 곳도 인근 주민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6) 형집행법 제7장 특별한 보호,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이하,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소년 등에게 특별한 처우를 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17)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시설물로 교도소, 구치소, 도살장, 고압변전소, 원자력발전소, 화장장 등이 이에 속하며, 주변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주변 입지에 들어서는 것을 무조건 반대한다.(네이버 지식백과)

〈표2〉 전국교정시설 준공년도 및 노인전담수용시설 지정 현황 (2019.4월 현재)

시설구분	준공년도	경과연수	수용구분	시설구분	준공년도	경과연수	수용구분
안양(교)	1963	56		천안(교)	1990	29	
강릉(교)	1970	49		경북2(교)	1992	27	
창원(교)	1971	48		울산(구)	1993	26	
대구(교)	1971	48	노인전담	수원(구)	1996	23	
제주(교)	1971	47		평택지소	1996	23	
전주(교)	1972	47		인천(구)	1997	22	
경주(교)	1973	46		논산지소	1997	22	
부산(구)	1973	46		대구(구)	1998	21	
홍성(교)	1974	45		여주(교)	2001	18	
부산(교)	1977	42		서산지소	2001	18	
공주(교)	1978	41		청주여(교)	2003	16	
청주(교)	1979	40		충주(구)	2004	15	
원주(교)	1979	40		통영(구)	2004	15	
춘천(교)	1981	38		순천(교)	2004	15	
의정부(교)	1981	38		포항(교)	2005	14	
김천소(교)	1981	38		화성직(교)	2009	10	
경북1(교)	1981	38		밀양(구)	2009	10	
경북직(교)	1982	37		영월(교)	2009	10	
경북3(교)	1982	37		해남(교)	2009	10	
대전(교)	1983	36	노인전담	서울남(구)	2011	8	
안동(교)	1985	34		서울남(교)	2011	8	노인전담
서울(구)	1987	32		상주(교)	2014	5	
천안개(교)	1988	31		장흥(교)	2014	5	
군산(교)	1988	31		광주(교)	2014	5	노인전담
목포(교)	1989	30		정읍(교)	2014	5	
진주(교)	1990	29		서울동(구)	2017	2	

※ 2018년 교정통계연보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 (교):교도소, (구):구치소, 직(교):직업훈련교도소, 개(교):개방교도소

최근에 지어진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는 외관에서 보았을 때, 교정시설이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일반 연수원이나 공공청사의 이미지 등으로 건축이 이루어졌으며, 주변의 법원과 겹찰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위치와 구조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오래되고 낡은 교정시설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통하여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주변의 환경과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 내부 구조 못지않은 외관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또한 교도소의 신설 및 확장에 있어, 특정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교정시설의 유치를 원하는 등의 이유로, 교정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희망하는 곳에는 교정당국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¹⁸⁾.

2.2.1 노인범죄의 증가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최소한의 준비를 할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를 않았다. 그러나 노인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변화를 일으켰으며 과학의 발달은 수명을 연장시켜 생산가능인구의 범위를 좀 더 넓혀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준비도 늦었고 그 결과 60세에 정년퇴직 후, 연금으로서 경제적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40% 정도이지만 대다수 노인인구의 절반 정도가 경제적 빈곤으로 내몰려 있다¹⁹⁾.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자 인구에 비례라도 하듯이 고령자범죄 또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3〉 최근 10년간 고령자 범죄 발생 추이

(단위:발생비 %)

연도 \ 죄명	증감률(평균)	재산 범	폭력(상해 등)	강력범(살인 등)
2008년	-	189.8	181.1	8.9
2009년	10.1	229.3	190.0	9.3
2010년	4.1	203.6	169.2	10.0
2011년	7.7	200.5	175.7	10.7
2012년	30.7	257.8	192.1	13.4
2013년	47.9	279.0	192.5	17.0
2014년	68.2	314.9	216.9	19.5
2015년	84.7	340.0	240.3	21.6
2016년	99.8	377.4	249.9	23.4
2017년	114.7	395.4	241.8	27.0

* 2018년 대검찰청 주요 범죄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아래의 〈표4〉에서 고령자범죄는 매년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교적 가벼운 단순범죄의 증가만 아니라 강력범죄의 증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51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재산범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61세 이상 고령자의 범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2.3배 정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18) 강원도 태백시는 탄광산업이 쇠퇴하면서 장기간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교정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19) 경기일보. 2018. “노인 빈곤시대 설 곳이 없다: 늘어가는 고령범죄” 11월 11일.

〈표4〉 최근 10년간 강력범죄의 연령별 발생 추이

(단위: %)

연도	인원 (명)	18 이하	19~30	31~40	41~50	51~60	61 이상
2008년	20,252	16.4	25.6	23.6	21.9	8.7	3.8
2009년	23,040	16.7	25.9	23.6	20.9	9.2	3.6
2010년	23,059	15.9	25.9	22.6	21.5	10.1	4.1
2011년	25,404	15.9	26.2	21.9	20.9	10.7	4.3
2012년	26,644	13.5	27.3	21.5	20.2	12.4	5.0
2013년	29,466	11.8	26.8	21.6	20.3	13.5	6.0
2014년	29,695	10.6	26.5	20.7	21.0	14.4	6.7
2015년	31,190	8.7	27.0	21.4	20.5	15.0	7.4
2016년	33,232	10.1	26.6	20.5	19.4	15.4	8.1
2017년	36,290	9.5	28.0	20.1	18.5	15.2	8.7

※ 2018년 대검찰청 주요 범죄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위의 〈표4〉 강력범죄의 추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령자에 의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증가율이 뚜렷하다, ‘대검찰청 2018년 범죄분석’에 의하면 고령자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도 고령 인구 증가, 독거노인의 증가 등과 더불어 경제적 빈곤문제와 심리적 불안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2.2 노인수형자의 수용 실태

노인수형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²⁰⁾’ 시행령 제81조(노인수용자 등의 정의)에서 “노인수용자란 65세 이상인 수용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수용자는 형의 선고가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기결수)와 별금 미납 등의 이유로 노역유치 선고를 받아 수감되어 있는 노역수형자, 그리고 재판을 받으며 진행 중에 있는 자인 미결수용자를 포함하는 말이다. 노인수용자는 먼저 노인에 해당되는 만65세 이상의 수용자에 해당되고 특별보호대상자로서 분류처우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를 받게 된다. 노인수형자는 일반 젊은 수형자에 비해 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노인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으며 운동기능의 저하로 생활의 동작이 느리고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노인수형자에 적합한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 것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다음의 글에서부터는 약칭하여 ‘형집행법’으로 사용.

이 가장 이상적이나 전담교정시설²¹⁾에서 수용되어 특별한 보호²²⁾를 받아야 하는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전담하여 분류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고령사회에 꾸준히 늘어나는 노인수용자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사실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4개 기관만이 노인전담수용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지만, 기관전부를 노인전담 수용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4개 기관을 노인전담수용시설로 지정하여 각 4개의 교정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용시설 중 일부를 구획하여, 노인수형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설치했던 것이다.

즉 여성만 수용하고 있는 청주여자교도소나 소년수용자만 집결되어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등 하나의 시설 전체를 전담시설로 활용했던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일부 수용동을 노인수형자 전담시설로 구획하여 운영했던 것이다. 운영방법은 노인수형자 처우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설치하되 시범운영 대상 50명을 선정하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014년 5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된 후, 대구(교), 대전(교), 광주(교) 등 4개 기관에서 약 200여명의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운영되어 온 것이다.

※노인수형자 처우관련 법령

「형집행법」 제54조	노인수용자 처우에 적정한 배려를 하도록 함
「형집행법시행령」 제81조	노인수용자란 만65세 이상임을 정의
「형집행법시행규칙」 제43조~ 제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수용자 전담교정시설에는 편의실과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함. - 노인성 질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함.

당시(2014년) 노인수형자 처우 개선방안의 검토배경에는 사회인구 전반의 노령화 추세에 맞물려 교정시설에도 고령의 노인수형자 비율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가 가능한

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항에 '학과교육생·직업훈련생·외국인·여성·장애인·노인·환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교정 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보호 대상자는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이 해당된다.

노인전담교정시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기본방향은 노인수형자에 맞는 환경개선과 노인의 특성에 맞춘 의료 및 교육·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처우개선이었다. 운영방법에 있어, 교정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전체를 전담시설로 하여 전국의 노인수형자를 한곳으로 집결시켜 운영하는 것과 지역별(지방교정청별) 1개 교정기관의 일부 수용동을 구획하여, 전담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나, 한 곳으로 집금할 경우 환자 비율이 높은 고령자에 대한 부담과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계호 등 업무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전국에 분포한 수형자 가족과의 접견을 위한 교통을 고려하여 후자로 결정 운영되었다.

〈표5〉 노인수형자 수용현황²³⁾

연도	노인수형자 /전체수형자	구분	계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2014년	1,019 / 29,993	남	940	548	362	30
		여	79	48	30	1
2017년	4,243 / 36,479	구분	계	〈노인수형자 전담수용시설 운영기관〉		
		남	3,858	4개 기관 :		
		여	385	서울남부(교), 대구(교), 대전(교), 광주(교)		

2014년 노인수형자 전담수용시설 설치 때와 비교해서 2017년 기준 전체수형자는 6,486명이 늘어난 약 12% 증가하였지만 고령자의 수는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²⁴⁾. 이것은 우리나라 인구 구성 비율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과 비례해서 노인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3 노인수형자의 현황과 처우

노인수형자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초 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노인범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노인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노인수형자도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수형자에 대한 시설측면에서나 관리프로그램에서 적절

23) 법무부 보안과(2014). 「2014년 노인수형자 전담수용시설 개선(안)」.

24) 법무부 교정본부 「2018년 교정통계연보」에서는 60세 이상과 70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2017년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의 수치는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정확한 수치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하여 노인전담수용시설의 한 곳으로 이용 중인 서울남부(교)의 65세 이상에서 60~64세의 인원을 뺀 비율의 인원구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한 처우의 향상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제자리수준에서 머물며 있었다.

노인수형자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상부기관에서는 노인전담수용시설 및 노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등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적절한 처우 시행에 미흡한 면도 많았다. 그동안 노인수형자는 「형집행법」에서 특별보호 대상자임에도 수용과밀화와 낙후된 교정시설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노인수형자에게는 전담수용시설이 아니래도 병동수용거실 등 고령자거실에 수용되어 적절한 처우를 받아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수형자는 일반수형자를 관리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노인수형자가 「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대상이라는 인식보다는 수형자라는 틀 아래에서 처우가 되어온 것이다.

〈표6〉 최근 10년간 수형자 연령별 수용인원 현황

(단위: %)

연령별 연도	계 (%)	60세 이상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20세 이상	19세 이하
2008년	32,197 (100%)	4.4	15.6	32.2	27.9	18.9	0.9
2009년	32,297 (100%)	4.6	16.7	31.5	27.0	19.1	1.1
2010년	31,981 (100%)	5.1	18.4	31.0	26.4	18.0	1.1
2011년	31,198 (100%)	5.8	20.3	31.1	25.7	16.2	0.9
2012년	31,434 (100%)	6.8	21.8	30.9	24.4	14.9	1.1
2013년	32,137 (100%)	7.3	22.9	30.2	23.9	14.6	1.1
2014년	33,444 (100%)	8.4	23.9	29.9	22.7	14.2	1.0
2015년	35,098 (100%)	9.4	24.6	29.4	21.9	13.8	0.9
2016년	36,479 (100%)	10.5	25.4	28.2	21.0	14.0	0.9
2017년	36,479 (100%)	11.6	25.8	26.9	20.9	14.0	0.8

※ 2018년 교정통계연보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위의 〈표6〉에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연령별 수형자를 살펴보면 19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으면서 오히려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에서 수형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노인수

형자가 교정시설에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수형자를 위한 노인전담 수용시설이 설치되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체조를 통한 건강관리 운동 프로그램이나 음악치료 프로그램 등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하면서 노인수형자에 적절한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제3장 노인수형자 관련 교정사고 유형분석

3.1 노인수형자 관련 교정사고 현황과 특성

노인수형자에 대한 교정사고는 수형자 사이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하여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가장 많고, 노인수형자 자신에게 일어나는 교정사고는 안전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2018년 교정시설 내에서 일어난 전체 교정사고는 총 1,012건으로 전년도 대비 104건(11.4%)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수용자간 폭행사고도 95건(20.8%)으로 증가하였다. 유형별 교정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수용자간 폭행사고가 가장 많았다. 노인수형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 노인수형자 교정사고 건수는 102건으로 전체 교정사고의 10%가 노인수형자 관련 사고이다.

〈표7〉 전국교정시설 10년간 유형별 교정사고 현황²⁵⁾

연도＼유형	계	폭행상해	직원폭행	소란난동	자살	병사	기타 ²⁶⁾
2009년	819	377	97	44	10	15	274
2010년	739	433	75	40	9	11	169
2011년	911	432	53	13	11	16	386
2012년	853	373	43	22	4	26	384
2013년	909	374	77	26	7	19	404
2014년	837	385	49	23	4	24	352
2015년	940	491	43	17	4	24	360
2016년	894	480	44	5	7	22	355
2017년	908	455	73	4	2	20	354
2018년	1,012	550	89	4	7	33	328

* 유형별 교정사고는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25) 법무부 교정본부(보안과) ‘교정사고 등 통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교정사고를 최근 10년간 발생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26) 사기, 음란행위(강제추행 등), 혐위사실 신고, 강요 등이 있다.

〈표8〉 전국교정시설 10년간 자살 및 자살기도 사고 현황 (단위:명)

구분/연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자살(사망)	7	2	7	4	4	7	4	11	9	10
자살기도	62	44	52	51	51	73	89	72	91	90

〈표9〉 OECD 주요 국가별 수용자 자살사고 비교(2011년~2014년) (단위:명)

국가	한국	미국	체코	뉴질랜드	영국	스웨덴	프랑스
자살인원	26	2,143	44	23	284	26	467
10만 명 당 자 살 인원	14	23	54	67	83	104	176

〈표7〉에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노인수형자 사고 유형은 폭행·폭언 등 과실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다. 사소한 시비가 폭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노인수형자는 대부분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에게 일반화되어있는 취업공장에 취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수용거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보니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된 동료수용자와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자주 생기게 되고 서로가 자신의 주장이 강하다보니 결국은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안 좋은 기분이 누적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표10〉 60세 이상 교정사고 유형별 사고 현황 (단위:건)

계	자살	자살 미수	병사	폭행 상해	직원 폭행	소란난 동	부상	기타
102	2	5	18	44	6	1	6	20

〈표11〉 병사사고 원인별 현황 (단위:건)

계	심장질환	암	간경화	기타
18 (100%)	12 (66.7%)	0.5 (3.0%)	0.5 (3.0%)	5 (27.3%)

〈표12〉 폭행사고 발생 원인별 현황

계	우발적 충동	자기 과시	처불 만	장난	신입식	기타
44 (100%)	35 (79.5%)	2 (4.2%)	0.2 (0.5%)	3 (6.3%)	0.1 (0.3%)	2 (4.4%)

〈표13〉 폭행사고 장소별 발생 현황

계	거실	작업장	운동장	복도	조사실 정별실	수용 관리팀	기타
1,691 (100%)	1,332 (78.8%)	64 (3.8%)	43 (2.5%)	70 (4.1%)	91 (5.4%)	30 (1.8%)	61 (3.6%)

교정사고는 과밀수용의 장기화에 따른 수용환경이 열악하고 환자, 정신질환자, 노인수형자 등 수용인원이 증가하면서 계절적인 영향(여름철 폭염)까지 겹쳐, 교정사고 발생 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수형자의 자살관련 발생 동기는 자살기도자 조사결과를 보면, 노인성질환에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으며, 출소 후 아무런 대책도 없을뿐더러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발생한다. 또한 폭력사건의 원인 대부분은 우발적인 충동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기과시, 장난 등의 순서로 일어나고 있다.

3.2 교정사고의 유형 및 교정제도의 한계

교정사고는 매년 수용자간 폭행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발생원인은 대부분이 우발적이다. 한 공간에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모여 있으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일 것이다.

발생 원인이 우발적인 사실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수용자들은 교도관으로부터 관리 받고 있는,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자간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준다거나 배려해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60세 이상의 수용자의 교정사고는 일반수용자에 비해 많다. 시기로 인한 허위신고,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안전사고가 많다. 또한 고령수형자로 갈수록 노인성질환에 의한 환자가 흔히 발생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심장질환에 의한 사고가 66.7%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다. 우리나라 70세 이후 사망원인 1위가 동맥경화성 혈관질환인 심장과 뇌혈관 질환이 말해주듯이 교정시설 내에서도 노

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3.2.1 교정사고의 유형

최근 10년간 교정사고의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 기타, 직원폭행, 소란·난동, 병사, 자살 등의 순서로 사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폭행 관련 수용자는 절반(53.1%)이 초·재범으로서 이기적인 행동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자들로서 대부분이 공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폭행사고(82.9%)를 일으킨다. 이들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싶어 우발적 사건을 만들어 과시하기도 한다.

〈표14〉 발생 원인별 현황(2018년도)

구 분	계	우발적	자기 과시	처우 불만	장 난	신입식	기 타
폭행, 상해 (%)	639 (100)	508 (79.5)	27 (4.2)	34 (5.3)	40 (6.3)	2 (0.3)	28 (4.4)

※ 폭행관련 교정사고는 수용자간, 직원과의 사건을 포함하여 정리하였음.

위의 〈표14〉에서 살펴보면 폭행 관련 교정사고는 우발적 충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가장 많았다. 처우불만은 직원과의 관계에서 주로 일어났으며, 수형자간 신입식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관리자의 눈을 피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예전처럼 신체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왕따 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의 연구 중에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에 비례해서 정신건강을 분석한 결과 평균 6.9년의 수용생활을 한 노인수형자는 우울증과 불안, 인지장애 등 정신질환의 유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⁷⁾. 노인수형자를 위한 수용관리에 정신건강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출소 후에도 사회적응에 연결되기 때문에 노인수형자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치매를 예방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²⁸⁾.

27) Pande, Vivek; Gillespie, James; Stapleton, Andrew. 2016. "Elderly Prisoners and Medicare".

28) 디멘시아뉴스. 2019. "교도소 노인수형자 치매 관리 강화…필요성. 4월 8일.

〈표15〉 교정사고 연령별 현황(2018년도)

구 분	계	19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이상
폭행, 상해 (%)	639 (100)	11 (1.7)	149 (23.3)	160 (25.1)	144 (22.5)	125 (19.6)	50 (7.8)

※ 폭행관련 교정사고는 수용자간, 직원과의 사건을 포함하여 정리하였음.

위의 〈표9〉에서 보면 연령별 수용자간 폭행관련 교정사고는 30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다음 20대, 40대, 50대 순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세 이하, 60세 이상에서 폭행 관련 사고가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직원관리에 보다 순응적(19세 이하)하거나 협조적인(60세 이상) 경향이 많은 것도 있으나, 주의·경고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고는 빠져있다. 2018년 서울남부교도소 노인수형자 관련 교정사고 자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징벌에 의한 처벌보다 주의·경고 등 훈방조치가 대부분이다.

〈표16〉 서울남부교도소²⁹⁾ 노인수형자 수용 현황 (단위:명)

계 / 구분	공장취업 직업훈련	노인전담 수용시설	병동 및 치료거실	미지정 고령자실	기타 격리수용
111	8	32	36	24	11

※ 2018년도 노인수형자는 전체 수용인원 대비 약10.6% 차지함.

노인수형자 관련 교정사고를 조사한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수형자의 교정사고에서도 일반수형자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교정사고는 폭력관련 사고이다. 하지만 징벌집행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11.4% 정도이다. 대부분이 경미하거나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고, 가해자는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교정교화 차원에서도 징벌보다는 경고·주의로 훈방 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17〉 서울남부교도소 2018년도 노인수형자 폭력관련 사고 현황 (단위:명)

계 / 구분	금치 1월 이상	금치 10일 이하	금치 5일 이하	금치 3일 이하	주의 · 경고
35	0	1	1	2	31

※ 서울남부교도소 2018년도 노인수형자는 폭력관련 사고자료 재구성.

29) 서울남부교도소는 노인전담수용시설로 시범 운영된 기관으로, 현재 전국에서 시행·운영 되고 있는 기관은 서울남부(교)를 포함하여 대전(교), 대구(교), 광주(교) 등 4개 기관이 있다.

노인수형자 폭력관련 사고 중,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3가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사소한 일에 감정을 품고 있다가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많은데,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안 좋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기회에 시비를 걸어 상대방에게 자존감을 다치게 하거나, 과실로 위장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1

사건개요(과실) ³⁰⁾	
가해자 (김00)	4인 수용거실에 수용중인 김00(67세)는 같은 거실의 동료수용자인 박0(69세)이 점심배식을 하면서, 자신에게만 디저트로 나오는 후르츠칵테일의 건더기는 조금만 주고 국물만 준 것에 양심을 품고 있다가, 익일 오전 운동을 하기위해 거실 문을 나설 때, “빨리나가라”하면서 뒤에서 박0의 등을 힘껏 밀치는 바람에 앞으로 넘어져 얼굴에 안면타박상과 손목관절을 다치게 함.
피해자 (박0)	

사례 2

사건개요(폭언 등)	
가해자 (신00)	신00(70세)은 평소 피해자 김00(68세)이 생활용품 구매도 안하고 같은 거실 동료수용자들이 반찬을 구매해서 먹을 때, 얻어먹는 주제에 화장실 청소도 안하고, 설거지도 자신이 먹은 것만 닦아서 “야 김사장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도 맙아서 하고, 화장실도 청소하는 것 아니야” 하니 김00은 “내가 달라고 한 적 있어, 있는 척 하지마라”라고 해서 신00은 “야 거지새끼야, 그러니까 평생 빌어먹을 것이다.” “앞으로 밥 먹을 때, 너 혼자 떨어져서 먹어 새끼야. 그러니까 니 새끼들도 면회나오겠냐? 잘 나간다며~” 하는 등 폭언과 모욕을 줌.
피해자 (김00)	

사례 3

사건개요(소란 등)	
가해자 (류00)	류00(78세)은 같은 거실의 동료수형자들 중 연장자로서, 평소 같은 거실의 이00(68세)와 안00(71세) 둘은 자신의 눈치를 보면서 귀엣말로 자주 속닥속닥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 명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안00이 구매한 빵을 이00에게는 묻지도 않고 한 개 주고, 자신에게는 “빵 먹었어요?”라고 묻자, 류00은 “ㅅㅂ 언제 죄 본적 있어”하면서 옆에 읽고 있다가 놓아둔 책을 집어 들어 던지는 바람에 안00의 얼굴안면에 타박을 입힘.
피해자 (안00)	

30) 가해자 및 피해자는 가명으로 사용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건의 경증으로 징벌 및 형사입건 송치하나 대다수의 사건이 경미하여 징벌집행에 있어서도 99%가 금치·경고가 차지하고 있음.(법무부 2018년 교정사고 등 통계분석)

3.2.2 교정제도의 한계

교정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시설부족에 대한 과밀수용이다. 위의 〈표7〉에서 보듯이 교정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폭행 관련 사고는 비좁은 공간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얼굴을 마주보면서 지내야하는 특성이 서로의 사이가 좋으면 편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고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고는 생기게 마련이다. 보통의 수형자들이 취업을 하여 공장에 출·퇴근하는 경우는 그나마 좁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댈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싸울 확률도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일체의 취업도 안하고 있는 자 이거나 단체생활에 적응이 힘든 자, 미지정 수용거실에서 취업을 대기 중에 있는 자들은 특히 한 여름철 더위가 심할수록 싸움사건이 많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매우 낡고 노후화되어 계절별 적절한 온도를 제공하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이다.

최근에 지어진 교정시설은 냉·난방 자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노인수형자에게 배려하는 최고의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이라는 신체적 특수성 때문에 추위나 더위에 약하고,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으로 건축되어진 현대식 시설에서의 수용생활은 노인수형자를 위한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국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수형자가 4천명이 넘지만 노인전담수용시설에 수용되어 노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수형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많은 노인수형자가 현대식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50代 이상의 수형자 비중이 급증³¹⁾ 하고 있고, 고령층의 급증은 우리사회의 인구변화가 교정시설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 원인에 있다. 보도된 자료처럼 고령층에는 생활고에 지쳐 돌봐줄 곳이 없어 차라리 공짜 밥을 먹기 위해 교도소를 선택한다면 교정시설에서 ‘형집행법’에 의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늘어나는 노인수형자에 대한 관규위반 등 제제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다. 신체적으로 허약한 노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형자가간 폭력행위 등에 관한 제제에 기껏 금치³²⁾ 3일 이하 정도의 가벼운 처분을 하고, 그것도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 주의·경고가 주어진다. 가뜩이나 노인수형자에 대한 전담수용시설이 부족

31) 한국경제. 2019. “생활 苦에 지친 고령층, 차라리 공짜 밥 먹자”. 5월 1일.

32) ‘형집행법’에 정벌의 집행순서로 금치, 신청에 의한 작업정지,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등이 있는데, 금치는 제23조(금치중인 수형자에 대한 처우)에 따라 접견, 집필, 도서열람 등을 금치일수 만큼 제한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교화상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한 지금,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과 교정 교화에 힘쓰는 여러 단체들의 후원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제4장 노인수형자 적정 수용시설 처우 개선방안

4.1 노인수형자에 대한 인식 전환

국가는 노인에게 「노인복지법」에 따른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하고, 국민은 경로효친에 의해서 노인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의2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정시설에서의 노인에 대한 특별처우로서 노인수형자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로서 「형집행법」 제54조³³⁾에서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형집행법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노인수용자 전담교정시설에서의 편의성 제공과 노인성질환에 관한 전문적 의료처우를 할 수 있도록 개발·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고령사회가 진행되어 가면서 주변에서 요양원,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이용자의 측면에서 개념화한 논문³⁴⁾에 따르면, 첫 번째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그 다음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질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교정시설에서 노인수형자에 대한 접근방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교도관은 노인수형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교정기관에서 노인수형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대부분 외부전문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에 대한 전문지식습득은 노인수형자를 전담하면서 하루 24시간을 함께하는 교도관에게 갖추어져 할 당면과제일 것이다. 또한 노인수형자에 대한 접근은 노인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배려를 참고하여 교정시설 내에서도 특별보호대상자로서 적정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항 「소장은 노인수요자에 대하여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5항 「노인수용자·장애인수용자·외국인수요자 및 소년수요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개정 2015.3.27.>

34) 최재성·이상우. 2014. “한국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 서울도시연구, P130-131.

4.2 노인전담 수용시설의 확대

「형집행법」 제57조(처우)와 제59조(분류심사) 제1항은 노인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하여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동법 제54조는 노인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노인수형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가 규정되어 있다. 현재 전국의 교정기관에서 노인전담 수용시설로 운영되어 지고 있는 곳은 전국 각 지방교정청 소속기관을 모두 합한 전체 52개 기관 중에서 4개의 기관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정된 각 교정기관은 건축물 전체 중에서 일부를 구획하여 노인전담 수용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노인전담 수용시설을 설치할 2014년의 때와 노인수형자 인원을 비교해보면 약 4배 정도의 노인수형자가 늘어났으나, 노인수형자를 전담할 있는 전문수용시설의 추가 신축은 없었다.

2020년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인 1955년생의 노인들의 합류하면서 노인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를 대부분은 노후대책을 위한 준비가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 사회여건상 자식들 양육비와 거주하는 곳에 자산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재정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노인들이 많다. 과학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기대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감은 일부 노인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노인수형자의 증가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교정시설의 노인수형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적정 수용인원이 초과하여 수용과밀화가 되는 실정에서 노인수형자를 전담하는 수용시설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본은 노인수형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 이전에 원칙적으로 성인수형자에게 적용되는 법령³⁵⁾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률 규정³⁶⁾의 범위 내에서 연령에 따른 구분과 건강상 유지·관리, 심신쇠약이나 노인성질환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노인수형자를 관리하고 있다³⁷⁾. 미국은 노인수형자의 처우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다. 특정 교정시설 전체에 노인수형자 전담수용시설을 만들어 노인에 특성에 맞는 처우를 시행하고

35) 「수형자분류규정」. 1972, 훈령·법무성 교의(矯醫) 557호.

36) 수용 분류급으로는 Px(신체상의 질환 또는 임신 혹은 출산으로 인해, 상당 기간의 의료 또는 양호의 필요가 있는 자), Py(신체장애로 인한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시청각 장해자), Pz(연령이 60세 이상으로 노쇠현상이 상당 정도 인정되는 자 및 신체허약으로 인해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처우 분류급으로는 T급(전문적 치료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 S급(특별한 양호적 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로 각각 분류되어, 일반수형자에 준하는 처우가 행하여지고 있다.

37) 일본 교정시설에서는 「노인수형자 지도」를 실시하여 노인수형자가 삶의 의욕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건강한 체력유지 관리를 바탕으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처우와 시설 면에서 다양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있다. 이곳은 노인수형자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소규모의 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여 성과를 맛보게 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높이고 출소 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노인수형자에게는 대부분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경중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수용생활을 마치고 나서 출소 후 정신질환을 겪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50%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었으며, 자유로운 사회인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수용생활을 마치고 출소 후 2주 내 사망할 확률이 거의 13배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Allen, Wakeman, Cohen, & Rich. 2010). ³⁸⁾ 따라서 노인수형자를 위한 노인전문수용시설의 확대설치는 노인수형자를 위한 교정복지 실천은 물론, 노인수형자가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적 공간이 되어줄 것이다.

4.3 노인수형자를 위한 편의시설 정비

지난 2014년 교정본부는 사회 인구 전반의 노령화 추세에 맞물려 교정시설에도 노인수형자의 증가로 이들의 처우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특화된 처우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처우가 가능한 전담교정시설 운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국 4개의 지방교정청에 각 1개의 기관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일부를 구획하여 노인수형자를 위한 전담수용시설을 설치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시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노인수형자 전담수용시설에 수용되는 한정된 인원은 늘어나는 노인수형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4년 노인전담수용시설을 수용된 노인수형자는 전국 4개 기관에 약 200명 정도였으며, 당시 전체 노인수형자 1,019명의 19.6%에 해당한다. 1/5만이 전담수용시설에서 노인수형자로서의 권리를 보호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제한된 시설에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노인수형자는 4천명이 넘어섰고,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전담수용시설의 신축은 없었다. 전국적으로 일반수형자 기준에 맞추어져 있는 시설에서의 노인수형자에 대한 편의제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대다수 노인수형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대상임에도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노인수형자의 증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노인전담수용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청주여자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와 같이 시설 전체를 노인수형자를 위한 전담수용시설로서 만들어 노인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시설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결

38) Pande, Vivek; Gillespie, James; Stapleton, Andrew. 2016. “Elderly Prisoners and Medicare” .

국은 일반수형자의 수용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됨으로서 일반 수형자의 수용시설의 과밀화를 불러오면서 돌려막는 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수형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국의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일반수형자의 생활편의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일부 구획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여 노인수형자가 안정되고 편리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전담수용시설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전담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수형자들의 혜택은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수형자에게도 노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 동참시켜 같은 처지에 있는 환경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살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4.4 노인수형자 전담 교도관의 양성

노인수형자를 위한 노인전담수용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들을 관리하는 교도관에 대하여는 이제껏 별다른 교육은 없었다. 교정본부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사회 변화와 노인수형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교정시설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인수형자 전담수용시설을 설치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수형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교도관의 교육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나면서 거리에는 요양원, 요양병원, 재가서비스, 등 노인관련 업체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은 「형집행법」을 근거로 일반수형자에 준하여 노인수형자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일본에서도 노인수형자에 대한 수용관리는 원칙적으로 일반수형자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고령수형자 대상 별도의 분류심사를 거쳐 세부적으로 고령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해주고 있으며 미국은 노인수형자들이 자신의 수용생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 규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교도관에게 자신을 맡긴다는 취지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만큼 교도관에게도 선행적 전문지식을 요구하게 되고 노인수형자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의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정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노인수형자를 관리할 수 있는 노인전담수용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에게 제도적으로 전문적인 자격³⁹⁾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4.5 노인수형자를 위한 적정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수형자에 대한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교정시설 내 즐거운 수용생활에 맞추는 것도 현실적이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출소 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단체, 복지기관, 일자리지원 참여업체 등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교정기관에서는 수형자를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출소 전·후 단계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교정처우를 시행하고 있다.⁴⁰⁾

노인수형자를 위한 건강관리유지와 함께 적정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참여하는 외부 위탁 작업이나 교도작업으로 진행되는 일의 내용이 단순한 것 보다는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수형자들이 현재 단순한 작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출소 후 사회에서도 일과 연계되어질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줄 노인수형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져야 한다⁴¹⁾. 이때 중요한 것은 노인수형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면 기대효과는 클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경우처럼 교정기관에서 운영되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수형자의 자격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함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둘째는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자원봉사와 기부금을 활용하여 주정부예산의 부족을 극복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교정현장에서도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후원금 모집에 적극 나서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일부 해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제5장 결 론

한국사회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비한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의 속도는 사회전반적인 곳에서 많은 이슈를 만들어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노인의 빈곤이다. OECD회원국가

39) 사회복지사, 노인요양보호사, 심리상담사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40) 최영신·박선영. 2017. “미국 수형자 인성교육의 특성과 우리나라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운영 방향”. *교정담론*, 제11권 제1호, p128-130.

41) 교도작업은 주로 단순한 작업, 즉 쇼핑백 접기, 봉투 접기, 포장하기, 텁 붙이기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출소 후 사회에 나가 일과 연계되어 지속되려면 단순한 작업만이 능사는 아니고, 더 나아가 조립, 품질검사 등 좀 더 복잡한 작업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중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다. 노인의 빈곤과 사회적 소외감은 노인범죄로 이어질 충분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결국은 노인수형자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교정의 현장에서는 노인수형자에 대한 적정처우의 대책은 과거를 그대로 이어온 것이었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의 반영은 상당히 미흡했다.

노인수형자의 교정사고 대부분의 유형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폭행·상해 사고이며 본인 부주의로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대부분이었다. 노인수형자의 교정사고 원인의 주범은 낡고 오래된, 과밀화된 수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교도관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노인수형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유지에 기반을 두고,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⁴²⁾ 서비스 질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접근방법으로 다가서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므로 먼저 교도관의 노인수형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전담 수용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노인전담 수용시설 투자만을 기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기존 시설을 변형하여 노인전담 수용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일반수용자에게 맞추어져 있는 편의시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노인수형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대단한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몸을 가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손잡이에서부터 안내책자의 활자크기의 변형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넷째 노인수형자를 위한 전담 교도관을 양성해야 한다. 교도관의 노인수형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수준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수형자라는 신분에 앞서 노인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할 줄 아는 전문지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노인수형자의 출소 후 재사회화를 위한 적정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져야 한다. 노인수형자를 위한 건강에 대한 유지관리교육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연계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외부 위탁업체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노인수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 하여야 한다. 나아가 노인수형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고, 내용면에서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노인수형자들이 출소 후 다시금 재범으로 연결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42)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핵심이다.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배려의 대상이 노인수형자이다. 즉 우리사회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자율성과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가 누구인가?’라는 접근은 교정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관련 프로그램에 노인수형자들의 자율적 참여와 노인수형자에 맞는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 등과 비교할 수 있으며 접근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은영·권수진·원혜욱. 2014.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경태. 2009.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43호, P147-169.
- 김하열. 2017.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과 인간의 존엄성"-현재2016.12.29. 법조협회, 법조66권3호.(2013현마142)
- 박영숙. 2011. "교정시설 내 노인 수용자의 인권 확대 방안", 인권복지연구 제9호, P25~41.
- 박영숙·천정환·김주연·강영실·고명석·김수정·황희숙. 2013. "교정복지론". 서울: 그린출판사 사회복지 시리즈3
- 선영화. 2015.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영남·이승우·이윤호. 2015. "교도소의 교정환경이 수형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38호, P91-120
- 안성훈. 2011. "일본 노인수형자의 교정처우",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지」, 제5권 2호, P98-99.
- 허경미. 2017. "노인수용자의 처우 관련 협행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12권 제4호.
- 유영재·유정우. 2016. "민영교도소 평가와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5권 1호, P94-127.
- 이동임. 2015. "노인전담 교정시설 설치를 통한 노인수형자 처우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P201.
- 이백철. 2017. "21세기 한국교정의 과제와 미래",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1권 제1호.
- 이영근. 2017.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 교정제도의 발전방향", 교정연구 제27권 제1호. P97-131
- 천정환. 2017.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혁신적 개선방안", 교정복지연구 제48호, P149~177.
- 최영신·박선영. 2017. "미국 수형자 인성교육의 특성과 우리나라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운영 방향". 교정담론, 제11권 제1호. p128-130.
- 최재성·이상우. 2014. "한국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 서울도시연구, P130-131.

2. 외국문헌

- Combalbert, Nicolas. 2019. "Effect of age and time spent in prison on the mental health of elderly prisoners". *Annales médico psychologipues, AMEPSY-2686; No. of 7.*
- Pande, Vivek., Gillespie, James., & Stapleton, Andrew. 2016. "Elderly Prisoners and Medicare". *Journal of Leadership, Accountability and Ethics; Lighthouse Point Vol. 13, Iss. 1, 11-29.*

〈신문자료〉

- 동아일보. 2018. "노인 인프라 확보 땐 경제도 활성화...노인 친화적 환경 만 들어야". 9월 13일.
- 조선일보. 2018. "노인 빈곤 11년째 그대로인 현실". 11월 28일.
- 중앙일보. 2012. "노인 성범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7월 31일.
- 중앙일보. 2019. "빈곤한 노인 환자 넘치는 병동사회로 갈 건가". 4월 27일.
- 한국경제. 2019. "늙어가는 교도소...수형자 3명 중 1명 50代이상". 5월 1일.

〈인터넷 자료〉

- 김민진(SBS). 2018. "고령사회, 범죄도 고령화". 8월 27일.
- 노인범죄 관련 자료. 2019. <http://www.reportworld.co.kr/253477>. 5월 3일.
- 디멘시아뉴스. 2019. "교도소 노인수형자 치매관리강화...필요성...". 4월 8일.
- 박의래(연합뉴스). 2019. "분배·빈곤 개선 아직 부족...이전 정부 정책 극복 해야". 5월. 24일.
- 연합뉴스. 2015. "한국 노인빈곤 OECD 최악...연금소득은 최하위권". 3월 15일.
- 유 란(SBS). 2018. "빈곤·고독·가정불화 노인 강력범죄 2년 만에 40% ↑". 8월 27일.
- 조선비즈. 2019. "노인빈곤 경시가 양극화 참사 불렀다.". 9월 27일.
- 중기이코노미. 2019. "노인빈곤·계층간 소득격차, 복지강화만이 해법. 5월 25일.